

---

---

# 목차

## 파트1

### 탄소국경조정제도

#### 소개

- 1 CBAM 소개

#### 부과

- 2 CBAM 부과
- 3 수입
- 4 특별 세관 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제품
- 5 책임자: 수입업자
- 6 면제
- 7 내재된 배출
- 8 요율
- 9 탄소 가격 구제책

#### 행정관리 및 집행

- 10 행정관리 및 집행
- 11 형사 범죄

#### 일반

- 12 배출: 의미 등
- 13 해석
- 14 연계된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조항 제정권
- 15 규정 및 통지
- 16 개시 및 과도 조항

---

스케줄 1 - CBAM 제품

스케줄 2 - CBAM 개정

파트1 - 소개

- 파트2 - 등록
  - 파트3 - 납부, 회계기간, 신고서
  - 파트4 - 배출 결정과 입증, 그리고 탄소 가격 구제책
  - 파트5 - 중량 측정
  - 파트6 - 기록
  - 파트7 - 그룹 처리
  - 파트8 - 사업 활동의 인위적 분리
  - 파트9 - 사망, 무능력, 파산
  - 파트10 - 회수
  - 파트11 - 반환금
  - 파트12 - 처벌
  - 파트13 - 검토 및 항소
  - 파트14 - 해석
- 스케줄 3 - CBAM: 집행과 관련한 보충 개정
- 스케줄 4 - CBAM 관련 범죄
- 파트1 - 사기적 회피
  - 파트2 - 허위 진술

## 파트 1

### 탄소국경조정제도

#### 소개

#### 1 CBAM 소개

- (1)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라고 하는 세금을 이 파트에 따라 부과해야 한다.
- (2) 이 파트에서,
  - (a) 섹션 2~9 및 스케줄 1에서는 CBAM 부과를 규정하고 면제와 구제책을 명시한다.
  - (b) 섹션 10 및 스케줄 2와 3에서는 CBAM의 행정관리와 집행을 규정한다.
  - (c) 섹션 11 및 스케줄 4에서는 CBAM과 관련한 형사 범죄를 규정한다.
  - (d) 섹션 12~16에서는 일반 조항을 규정한다.

#### 부과

#### 2 CBAM 부과

- (1) CBAM은 제품을 영국에 수입할 때 CBAM 제품에 내재된 배출에 대하여 부과한다.
- (2) 이 파트에서, "CBAM 제품"이라 함은 스케줄 1에 명시된 제품을 의미한다(단, 섹션 4(3) 참조).
- (3) 스케줄 1에서는 다음과 같은 종류의 제품을 명시한다.
  - (a) 알루미늄 제품
  - (b) 시멘트
  - (c) 비료
  - (d) 수소
  - (e) 철강 제품

#### 3 수입

- (1) 이 파트의 목적을 위해 영국에 수입되는 제품을 언급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 (a) 제품이 이 섹션의 설명과 같이 최초로 수입된다. 그리고
  - (b) 제품이 이 섹션의 설명과 같이 영국에 수입된 이후 수출되는 경우 제품이 이 섹션의 설명과 같이 다음 번에 수입된다.
- (2) CBAM 제품은 TCTA 2018의 섹션 1에 따른 수입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면 해당 제품과 관련하여 수입 관세 채무가 발생할 때 수입된다.

- (3) CBAM 제품은 TCTA 2018의 섹션 30C에 따른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면 해당 제품과 관련하여 그러한 관세 채무가 발생할 때 수입된다.
- (4) CBAM 제품은 TCTA 2018의 섹션 30A(3) 또는 40A(1)(a)에 따른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면 해당 제품과 관련하여 그러한 관세 채무가 발생할 때 수입된다.
- (5) CBAM 제품은 다음과 같은 경우
  - (a) 재무부의 규정에서 배제되지 않는 것으로서, 북아일랜드에 유입됨으로 인해 영국에 수입되는 연합 제품
  - (b) 재무부의 규정에서 배제되지 않는 것으로서, 맨섬에서 영국으로 수입되는 제품, 혹은
  - (c) TCTA 2018의 섹션 36(6)에 따른 국내 제품관세/소비세법의 목적을 위해 수입 시점에 수입된다.
- (6) CBAM 제품이 맨섬에서 영국으로 수입되는 시점을 하위섹션 (5)에 따라 결정할 목적으로, 맨섬법 1979의 하위섹션 8(맨섬에서 제품 제거)은 그 법의 하위섹션 (2)의 단락 (c) 끝에 다음 사항이 삽입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d) "또는 CBAM 제품에 해당하는 제품"

#### 4 특별 세관 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제품

- (1) 다음의 경우 하위섹션 (2)를 적용한다.
  - (a) CBAM 제품이 특별 세관 절차 대상으로 신고되었다.
  - (b) CBAM 제품이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 (c) 처리로 인해 CBAM 제품이 아닌 제품이 생성된다. 그리고
  - (d) 그 제품이 영국에 수입된다.
- (2) CBAM 제품이 아닌 제품이 섹션 3의 설명과 같이 최초로 수입되는 경우 CBAM은 특별 세관 절차 대상으로 신고될 때 CBAM 제품에 내재되어 있던 양만큼의 배출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받는다.
- (3) 이 파트에 언급된 CBAM 제품에는 하위섹션 (1)에 설명된 상황에서 수입되는 제품이 포함된다.
- (4) 이 섹션에서 "특별 세관 절차"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 (a) TCTA 2018의 섹션 3(4)의 의미 내에서 특별 세관 절차
  - (b) 외부 처리 절차를 제외하고 UCC 2013의 제목 7에 명시된 특별 절차

#### 5 책임자: 수입업자

- (1) CBAM 제품에 내재된 배출에 대한 CBAM 책임자는 수입업자이다.
- (2) CBAM 제품이 섹션 3(2) 또는 (3)의 설명과 같이 수입되는 경우 수입업자는 다음과 같다.
  - (a) 수입 관세 또는 TCTA 2018의 섹션 30C에 따른 부과금에 대한 채무가 세관 절차 신고의 수락 시점 또는 절차와 관련한 요구사항 위반 시점에 발생하는 경우
    - (i) 절차 신고서에 명시된 이름의 사람, 혹은

- (ii)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신고되는 경우 대리 신고의 위임자, 혹은
- (b) 단락 (a)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대리 제품 수입의 위임자
- (3) CBAM 제품이 섹션 3(4)의 설명과 같이 수입되는 경우 수입업자는 다음과 같다.
  - (a) TCTA 2018의 섹션 30A(3) 또는 40A(1)(a)에 따른 관세 채무가 해당 제품과 관련한 연합 세관 신고의 수락 시점 또는 해당 제품이 수락되는 절차와 관련한 요구사항 위반 시점에 발생하는 경우
    - (i) 신고자, 혹은
    - (ii)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신고되는 경우 대리 신고의 위임자, 혹은
  - (b) 단락 (a)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대리 제품 수입의 위임자
- (4) CBAM 제품이 섹션 3(5)의 설명과 같이 수입되는 경우 수입업자는 대리 제품 수입의 위임자이다.
- (5) 이 섹션에서,
  - "세관 절차"라 함은 TCTA 2018의 섹션 3(3)에 명시된 절차를 의미한다.
  - "신고인"은 연합 세관 신고와 관련하여 UCC 2013의 제5(15)조에 나와 있는 의미와 동일하다.
  - "연합 세관 신고"라 함은 UCC 2013의 목적을 위한 세관 신고를 의미한다.

## 6 면제

- (1) CBAM은 수입업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 CBAM 제품에 내재된 배출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받지 않는다.
  - (a) 제품 수입 시점에 등록이 불가능하거나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스케줄 2의 파트 2 참조), 혹은
  - (b) 사업 수행 과정 이외의 방식으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 (2) CBAM은 다음의 경우 CBAM 제품에 내재된 배출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받지 않는다.
  - (a) 제품의 원산지가 표준 형태의 관세표(customs tariff) 목적에 따라 영국인 경우(TCTA 2018의 섹션 17(1)~(6) 참조)
  - (b) 제품이 섹션 3(2) 또는 (3)의 설명과 같이 수입되거나 해당 제품과 관련하여 제품 반송 구제책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 (c) 제품이 섹션 3(4)의 설명과 같이 수입되고 해당 제품과 관련하여 UCC 2013의 제203조에 따른 구제책(제품 반송)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 (d) 섹션 3(5)(a)에 속하는 제품이 다음과 같은 경우
    - (i) 북아일랜드에서의 제거로 인해 연합 제품으로서 영국에서 수출되었다.
    - (ii) 해당 제품의 수출국에서 3년 이내에 섹션 3(5)(a)의 설명과 같이 영국에 수입되었다
  - (e) 제품이 섹션 3(5)(b)의 설명과 같이 수입되고, 해당 제품과 관련하여 영국에 수입됨으로 인해 수입 관세 채무가 발생했다면 제품 반송 구제책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3) 이 섹션에서,

"표준 형태의 관세표"라 함은 TCTA 2018의 섹션 9~15 또는 섹션 19(4)에 따라 제정된 조항과 무관하게 효력을 지니는 것으로서, TCTA 2018의 섹션 8에 정의되어 있는 관세표를 의미한다.

"제품 반송 구제책"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용 가능한 수입 관세의 구제책을 의미한다.

(a) 영국 구제책 문서를 활용하여, 그리고

(b) 예전에 수출되었던 제품이 영국(즉, 그레이트브리튼)으로 반송 중이라는 사실을 참조하여

"영국 구제책 문서"는 TCTA 2018의 섹션 19에 따른 규정에 나와 있는 의미와 동일하다.

## 7 내재된 배출

(1) 이 파트에서, "CBAM 제품에 내재된(내부에 함유된) 배출"이라 함은 CBAM 제품 생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배출을 의미한다.

(2) 재무부는 CBAM 제품 생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배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조항을 제정할 수 있다.

(3) 하위섹션 (2)에 따른 규정에서는 특히 다음 품목의 생산과 관련하여 실시되는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에 대하여 조항을 제정할 수 있다.

(a) CBAM 제품, 혹은

(b) CBAM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재료

(4) CBAM 제품에 내재된 배출을 판단하고 입증하는 방법에 대한 조항은 스케줄 2의 단락 10 및 11을 참조한다.

## 8 요율

(1) CBAM은 CBAM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부문별 국내 가격을 CBAM 제품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등가 배출량의 톤수로 곱한 금액으로 관세를 부과받는다.

(2) CBAM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부문별 국내 가격"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재무부가 계산해서 공표하는 가격이다.

(a) 제품이 속해 있는 CBAM 부문, 그리고

(b) 해당 제품과 관련하여 CBAM 채무가 발생하는 분기

(3) 재무부는 다음과 같이 각 분기("Q 분기")에 대하여 각 CBAM 부문의 부문별 국내 가격을 계산해서 공표해야 한다.

### 1단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Q 분기 이전 분기에 영국 배출권거래제(ETS)에 따라 지정 배출 톤당 평균 가격("평균 ETS 가격")을 계산한다.

(a) Q 분기 이전 분기의 경매에서 영국 ETS 허용량에 대한 경매 통관 가격을 참조하여

- (b) 해당 분기의 경매에서 판매된 허용량이 없는 경우 하위섹션 (5)에 따른 규정에 명시된 대로

2단계

제도의 전년도에 생산된 부문별 직접 배출량으로 평균 ETS 가격을 곱한다.

3단계

제도의 전년도에 CBAM 부문에 속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에 할당된 무료 영국 ETS 허용량으로 총당된 부문별 직접 배출량의 백분율로 그 금액을 감액한다.

4단계

평균 ETS 가격과 탄소 가격 지원 요율의 합으로 제도의 전년도에 생산된 부문별 간접 배출량을 곱한다.

5단계

3단계와 4단계에서 구한 수치를 더한 후, 사례마다 제도의 전년도에 생산된 부문별 직접 배출량과 부문별 간접 배출량의 합으로 그 금액을 나눈다.

- (4) 이 섹션에서,

"경매"라 함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경매규정 2021(S.I. 2021/484)에 따른 경매를 의미한다.

"경매 통관 가격"은 영국 ETS 허용량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나와 있는 의미와 동일하다(규정 7 참조).

"탄소 가격 지원 요율"이라 함은 Q 분기에 대하여 FA 2000의 스케줄 6의 단락 42A에 명시된 요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산화탄소 등가 배출량 톤당으로 표시되는 요율을 의미한다.

"CBAM 부문"이라 함은 해당 표에 표시된 상품 코드를 제외하고, 스케줄 1의 표에서 하나의 머리글 아래에 명시된 상품 코드를 의미한다.

"부문별 직접 배출"이라 함은 CBAM 부문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의미한다.

(a) CBAM 부문에 속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영국에서 실시되는 규제 대상 활동 과정에서 배출된 지정 배출, 혹은

(b) 3단계의 목적을 위해, CBAM 부문에 속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영국 내 시설에서 실시되는 규제 대상 활동 과정에서 배출된 지정 배출

"부문별 간접 배출"이라 함은 CBAM 부문과 관련하여 CBAM 부문에 속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영국에서 실시되는 규제 대상 활동 과정에서 사용된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지정 배출을 의미한다.

"무료 영국 ETS 허용량"이라 함은 영국 ETS 명령의 파트 4A에 따라 무료로 할당된 허용량을 의미한다.

"시설"은 영국 ETS 명령의 제4조에 나와 있는 의미와 동일하다.

"제도의 전년도"라 함은 다음 사항을 의미한다.

(a) Q 분기가 속하는 연도 전 제도 연도, 혹은

(b) 수치가 완료되는 Q 분기가 속하는 연도 전 최근 제도 연도

그리고 "제도 연도"는 영국 ETS 명령의 제4조에 나와 있는 의미와 동일하다.

"전기 생산"이라 함은 전기가 소비되는 시설과 동일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아무 시설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분기"라 함은 3월, 6월, 9월 또는 12월 말에 끝나는 3개월의 기간을 의미한다.

"규제 대상 활동" 및 "지정 배출"은 영국 ETS 명령의 스케줄 2의 단락 3에 나와 있는 의미와 동일하다.

"영국 ETS 허용량"이라 함은 영국 ETS 명령에 따라 생성되는 허용량을 의미한다(제18조 참조).

"영국 ETS 명령"이라 함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명령 2020(S.I. 2020/1265)을 의미한다.

- (5) 재무부는 부문별 국내 가격의 계산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추가 조항을 제정할 수 있다.
- (6) 이 섹션에서,
  - (a) CBAM 부문에 속하는 제품은 해당 부문을 구성하는 상품 코드 중 하나에 속하는 제품을 지칭한다.
  - (b) 배출량은 이산화탄소 등가 배출 톤수를 지칭한다.
  - (c)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실시되는 규제 대상 활동에는 규제 대상 활동 시 소비되는 난방과 냉방의 생산으로 구성된 규제 대상 활동이 포함된다.

## 9 탄소 가격 규제책

- (1) 배출에 대한 CBAM의 부과금은 배출과 관련하여 다른 금전적 수단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 섹션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이 지급금은 다음과 같은 형식인지 여부와 상관없다.
  - (a) 납세 형식, 혹은
  - (b) 배출권거래제도에 따른 허용량의 교환 형식(단, 명시적이어야 함)
- (2) 재무부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비롯하여 이 섹션에 따른 규제책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조항을 제정할 수 있다.
  - (a) 어떤 금전적 수단이 규제책을 생성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조항,
  - (b) 금전적 수단이 배출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 처리되는 시점과 배출을 식별하는 방법에 대한 조항, 그리고
  - (c) 규제책의 금액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조항
- (3) 이 파트에서, "탄소 가격"이라 함은 하위섹션 (2)(a)에 따라 규정에 설명되어 있는 종류의 금전적 수단을 의미한다.
- (4) 하위섹션 (2)에 따른 규정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조항을 제정할 수 있다.
  - (a) 평균, 추정, 가정, 또는 제3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참조하여 규제책 금액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조항
  - (b) 탄소 가격과 관련한 기타 규제책, 허용량, 상쇄 등을 감안하는 것에 대한 조항
  - (c) 동일한 배출과 관련하여 2개 이상의 탄소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사례에 대한 조항

- (d) 탄소 가격을 지불하는 장소에 따라 구제책 금액이 달라지는 것에 대한 조항
- (e) 계산이나 측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을 명시하는 것에 대한 조항
- (5) 이 섹션에서, 배출과 관련하여 지급해야 하는 금액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a) 배출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금액, 그리고
  - (b) 배출과 관련하여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인 금액

### 행정관리 및 집행

#### 10 행정관리 및 집행

- (1) 스케줄 2에서는 CBAM의 행정관리 및 집행에 관한 조항을 제정한다.
- (2) 스케줄 3에는 CBAM 집행과 관련한 기타 법률의 보완적 개정이 담겨 있다.

#### 11 형사 범죄

스케줄 4에서는 CBAM과 관련한 형사 범죄에 관한 조항을 제정한다.

### 일반

#### 12 배출: 의미 등

- (1) 이 파트에서, "배출"이라 함은 인간 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온실가스(기후변화법 2008의 섹션 92의 의미 내에 있는 온실가스)의 대기 배출을 의미한다.
- (2) 이 파트의 목적을 위해, "배출"은 이산화탄소 등가량 톤 단위로 구하거나 표시한다.
- (3) 주무장관은 다양한 온실가스에 관한 이산화탄소 등가량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조항을 제정할 수 있다.

#### 13 해석

- (1) 이 파트에서,
  - "사업"에는 상업적 목적으로 실시되는 정부 부서 등 공공기관의 활동 또는 자선 활동이 포함된다.
  - "CBAM 제품"에 대해서는 섹션 2를 참조한다.
  - "CEMA 1979"라 함은 관세/소비세관리법 1979를 의미한다.
  - "주무장관"이라 함은 국왕의 세입 및 관세 담당장관을 의미한다.
  - "관세/소비세법"은 CEMA 1979의 섹션 1에 나와 있는 의미와 동일하다.
  - "FA"라 함은 금융법을 의미한다.

"HMRC"라 함은 국왕의 세입 및 관세를 의미한다.

"수입"에 대해서는 섹션 3을 참조한다.

"수입 관세"는 TCTA 2018의 섹션 1에 나와 있는 의미와 동일하다.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섹션 5를 참조한다.

"등록된 사람" 및 "등록 가능한 사람"에 대해서는 스케줄 2의 단락 2(10)을 참조한다.

"TCTA 2018"이라 함은 세법(국경간 무역) 2018을 의미한다.

"근로일"이라 함은 다음을 제외한 날을 의미한다.

(a) 토요일이나 일요일, 혹은

(b) 은행업무/금융거래법 1971에 따른 영국에서의 은행 휴무일

"UCC 2013"이라 함은 유럽연합(탈퇴)법 2018의 섹션 7A에 따라 효력을 지니는 것으로서, 연합관세법을 규정하는 2013년 10월 9일자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의 규정 (EU) 952/2013호를 의미한다.

"영국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배출권거래명령 2020(S.I. 2020/1265)의 제16조에 나와 있는 의미와 동일하다.

"연합 제품"은 UCC 2013의 제5(23)조에 나와 있는 의미와 동일하다.

"VATA 1994"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1994를 의미한다.

(2) 이 파트에서,

(a) 해당 사람이 섹션 5의 의미 내에서 제품의 수입업자인 경우에만 CBAM 제품을 수입할 수 있다.

(b) 제품 생산에는 제품 제조가 포함된다.

(c) 제품 처리는 TCTA 2018에 나와 있는 의미와 동일하다(그 법의 섹션 37(4) 참조).

(3) 재무부는 UCC 2013 또는 이를 대체하는 법률로 인해 개정이나 교체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이 파트를 개정할 수 있다.

#### 14 연결된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조항 제정권

(1) 재무부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규정에 따라 이 파트를 개정할 수 있다.

(a) 배출권거래제가 연결되어 있는 국가나 영토에서 유래한 제품에 내재된 배출에 대하여 CBAM 부과를 면제하는 것

(b) 스케줄 2의 파트 2(등록)를 목적으로 총 수입 가액을 계산할 때 해당 제품을 무시하는 것

(2) 이 섹션에서, "배출권거래제가 연결되어 있는 국가나 영토"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a) 영국과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국가 또는 영토로서, 이 계약은 영국 배출권거래제와 해당 국가의 배출권거래제를 연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b) 단락 (a)에 명시된 종류의 국가 또는 영토와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국가 또는 영토로서, 이 계약은 그러한 종류의 국가 또는 영토의 배출권거래제와 해당 국가의 배출권거래제를 연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5 규정 및 통지

- (1) 이 파트에 따른 규정에서는
  - (a) 다양한 목적으로 서로 다른 조항을 제정할 수 있다.
  - (b) 부수적, 결과적, 보완적 또는 과도적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 (2) 이 파트에 따른 규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통지에 명시된 사항을 참조하여 조항을 제정할 수 있다.
  - (a) 규정에 따라 재무부 또는 주무장관이 게시하고
  - (b) 추가 통지를 통해 철회되지 않은 통지
- (3) 이 파트에 따른 규정은 법적 문서로 제정한다.
- (4) 섹션 12(1)(연결된 배출권거래제)에 따른 규정이 포함된 법적 문서는 긍정적 절차(affirmative procedure)를 거친다.
- (5) 다음 조항에 따른 규정이 포함된 법적 문서는 수립되어 있는 긍정적 절차(made affirmative procedure)를 거친다.
  - (a) 섹션 (5)(CBAM 요율)
  - (b) 섹션 9(2)(탄소 가격 규제책)
  - (c) 스케줄 2의 단락 60(벌금)
- (6) 스케줄 1의 단락 2(3)과 TCTA 2018의 섹션 8에 따른 규정이 포함된 법적 문서는 TCTA 2018의 섹션 8에 따른 규정이 포함된 문서를 활용하는 적용되는 TCTA 2018의 섹션 32에 따른 절차를 거친다.
- (7) 하위섹션 (4), (5) 또는 (6)이 적용되는 규정을 제외하고 이 파트에 따른 규정이 포함된 법적 문서는 부정적 절차(negative procedure)를 거친다.
- (8) 섹션 16(과도 조항)에 따른 규정만 포함된 법적 문서에는 하위섹션 (7)을 적용하지 않는다.
- (9) 법적 문서는 긍정적 절차를 거치는 경우, 해당 문서의 초안이 사전에 제출되어 하원 결의를 통해 승인되지 않는다면 작성이 불가능하다.
- (10) 법적 문서는 수립되어 있는 긍정적 절차를 거치는 경우
  - (a) 작성 후 하원에 제출해야 한다.
  - (b) 해당 문서 작성일부터 시작하여 28일의 기간 종료 시 더 이상 효력을 지니지 않는다. 단, 그 기간 내에 하원 결의를 통해 해당 문서가 승인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 (11) 법적 문서는 부정적 절차를 거치는 경우 하원 결의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
- (12) 법적 문서는 하위섹션 (10)으로 인해 더 이상 효력을 지니지 않는 경우
  - (a) 해당 문서에 따라 예전에 실시된 사항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b) 신규 법적 문서의 작성을 막지 못한다.
- (13) 하위섹션 (10)의 목적을 위해 28일의 기간을 계산할 때는 다음과 같은 기간에 속하는 일수 전체를 감안하지 않는다.
  - (a) 의회가 해산되거나 정회되는 기간, 혹은

- (b) 하원이 4일 이상 휴회되는 기간
- (14) 부정적 절차를 거치는 이 파트에 따른 법적 문서의 규정에 포함될 수 있는 조항은 긍정적 절차 또는 수립되어 있는 긍정적 절차를 거치는 법적 문서의 규정에 포함될 수 있다.
- (15) 수립되어 있는 긍정적 절차를 거치는 이 파트에 따른 법적 문서의 규정에 포함될 수 있는 조항은 긍정적 절차를 거치는 법적 문서의 규정에 포함될 수 있다.
- (16) 이 파트에 따라 재무부 또는 주무장관이 게시하는 통지는 추가 통지를 통해 철회할 수 있다.

## 16 개시 및 과도 조항

- (1) 이 파트는 2027년 1월 1일 이후(당일 포함) 영국에 수입되는 제품과 관련하여 효력을 지닌다.
- (2) 재무부는 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의 효력을 수정할 수 있다.
  - (a) 2027년 또는 2028년에 등록을 유발하는 사람과 관련하여 스케줄 2의 단락 2(4)
  - (b) CBAM과 관련한 첫 회계기간의 목적을 위해 단락 6(2)/(3) 또는 7(2)
- (3) 섹션 15(1)(b)에 의거해 이 섹션에 따른 규정에 포함되는 조항은 법률 제정의 효력을 수정할 수 있다.

## 스케줄

### 스케줄 1

### 섹션 2

#### CBAM 제품

- 1 이 스케줄에 명시된 제품은 해당 표에 표시된 상품 코드 내 제품을 제외하고, 다음 표에 명시된 상품 코드 내 제품이다.

상품 코드	설명
<b>알루미늄 제품</b>	
7601	알루미늄의 괴
7603	알루미늄의 가루와 플레이크
7604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
7605	알루미늄의 선
7606	알루미늄의 판·시트(sheet)·스트립(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7607	알루미늄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판지·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7608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
7609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 [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7610	알루미늄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알루미늄으로 만든 판·봉·프로파일(profile)·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
7611	알루미늄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탱크·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상품 코드	설명
7612	알루미늄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통·드럼·캔·상자와 이와 유사한 용기(경질이나 연질의 튜브형 용기를 포함하고, 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며, 기계장치나 가열·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고,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7613	알루미늄으로 만든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으로 한정한다)
7614	알루미늄으로 만든 연선·케이블·얇은 밴드와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7616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b>시멘트</b>	
2507 00 80	그 밖의 고령토질의 점토
2523 10	시멘트 클링커(clinker)
2523 21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인위적으로 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23 29	그 밖의 포틀랜드 시멘트
2523 30	알루미나(aluminous) 시멘트
2523 90	그 밖의 수경성(水硬性) 시멘트
<b>비료</b>	
2808 00	질산과 황질산
2814	무수(無水)암모니아나 암모니아수
2834 21	질산칼륨
3102	질소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
3105 <i>예외:</i> 3105 60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인·칼륨 중 두 가지나 세 가지를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비료,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태블릿(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i>예외:</i> 인·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b>수소</b>	
2804 10	수소
<b>철강 제품</b>	
2601 12	응결시킨 것

상품 코드	설명
72	철강
<i>예외:</i>	<i>예외:</i>
7202 21	페로실리콘
7202 30	페로실리코망간
7202 50	페로실리코크로뮴
7202 70	페로몰리브데늄
7202 80	페로텅스텐과 페로실리코 텅스텐
7202 91	페로티타늄과 페로실리코티타늄
7202 92	페로바나듐
7203 93	페로니오븀
7202 99 10	인철
7202 99 30	페로실리코마그네슘
7202 99 80	기타
7204	철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scrap ingot)
7301	철강으로 만든 널말뚝(sheet piling)(구멍을 뚫은 것인지 또는 조립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용접된 형강(形鋼)
7302	철강으로 만든 철도용이나 궤도용 선로의 건설재료[레일(rail) · 체크레일(check-rail)과 랙레일(rack rail) · 스위치 블레이드(switch blade) · 교차구류(crossing frog) · 전철봉(point rod)과 그 밖의 크로싱피스(crossing piece) · 받침목(크로스 타이) · 이음매판(fish-plate) · 좌철(座鐵) · 좌철(座鐵)쇄기 · 밑판(sole plate)(베이스플레이트) · 레일클립 · 받침판(bedplate) · 격재(tie)와 레일의 접속이나 고착에 전용되는 그 밖의 재료로 한정한다]
7303	주철로 만든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7304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무계목(無繼目)으로 한정한다]
7305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예: 용접 · 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으로서 횡단면이 원형이고, 바깥지름이 406.4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7306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예: 오픈심(open seam) · 용접 · 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
7307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 · 엘보(elbow) · 슬리브(sleeve)]
7308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 · 수문 · 탑 · 격자주(格子柱) · 지붕 · 지붕틀 · 문과 창

상품 코드	설명
7309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形材)·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탱크·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7310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탱크·통·드럼·캔·상자와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용적이 300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7311	철강으로 만든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으로 한정한다)
7318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코치 스크루(coach screw)·스크루 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7326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 2 (1) 이 스케줄에서, "상품 코드"라 함은 제품 분류 표에 의해 제품의 분류에 배정된 코드를 의미한다.
- (2) 제품이 어떤 상품 코드에 속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에 대한 TCTA 2018의 섹션 8에 따른 규정이 CBAM의 목적을 위해 적용된다.
- (3) 주무장관은 제품 분류 표 또는 이를 대체하는 문서로 인해 개정이나 교체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단락 1의 표를 개정할 수 있다.
- (4) 이 단락에서, 제품 분류 표는 TCTA 2018의 섹션 8에 따른 규정에 정의되어 있는 제품 분류 표를 지칭한다.

스케줄 2

섹션 10

CBAM 개정

파트 1

소개

- 1 (1) 주무장관은 CBAM의 수집과 관리를 담당한다.
- (2) 이 스케줄에서,
  - (a) 파트 2에서는
    - (i) 등록을 유발하는 경우 그 관련자가 CBAM의 목적을 위해 HMRC에 등록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 (ii) 등록 및 등록 취소와 관련한 추가 조항을 제정한다.
  - (b) 파트 3에서는 CBAM 납부, 회계기간, 신고서에 대한 조항을 제정한다.
  - (c) 파트 4에서는 CBAM 제품에 내재된 배출의 결정과 입증, 그리고 섹션 9에 따른 구제책에 대한 조항을 제정한다.
  - (d) 파트 5에서는 중량 측정에 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 (e) 파트 6에서는 기록에 대한 조항을 제정한다.
  - (f) 파트 7에서는 그룹 처리에 대한 조항을 제정한다.
  - (g) 파트 8에서는 사업 활동의 인위적 분리에 대한 조항을 제정한다.
  - (h) 파트 9에서는 사망, 무능력, 파산에 대한 조항을 제정한다.
  - (i) 파트 10 및 11에서는 CBAM 복원 및 재납부에 대한 조항을 제정한다.
  - (j) 파트 12 및 13에서는 CBAM과 관련한 처벌, 검토, 항소에 대한 조항을 제정한다.

파트 2

등록

*HMRC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

- 2 (1) 등록을 유발하는 경우 그 관련자가 HMRC에 등록해야 한다.
- (2) 다음의 경우 등록이 필요하다.

- (a) 해당 월의 첫날이고, 이전 12개월 동안 해당 관련자가 사업 과정에서 £50,000 이상의 총 가액으로 CBAM 제품을 영국에 수입했다. 혹은
  - (b) 해당 관련자가 30일의 기간 종료 전에 사업 과정에서 £50,000 이상의 총 가액으로 CBAM 제품을 영국에 수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 (3) 하위단락 (2)의 목적을 위해,
- (a) 다음과 같은 CBAM 제품을 무시한다.
    - (i) 섹션 6(2)가 적용되는 CBAM 제품(영국 원산지의 제품 및 반송된 제품), 혹은
    - (ii) 섹션 4(특별 세관 절차)의 운영으로 인해 CBAM에 따른 관세를 부과받았다가 나중에 영국에서 수출된 CBAM 제품
  - (b) 제품이 섹션 4(특별 세관 절차)의 운영으로 인해 CBAM에 따른 관세를 부과받거나 부과받을 수 있는 경우 제품 가액은 특별 세관 절차를 거쳤거나 거칠 수 있는 CBAM 제품으로 인한 해당 가액의 금액이어야 한다.
- (4) 등록을 유발하는 사람은 등록을 처음 유발한 날부터 시작하여 30일의 기간 종료 전에 등록해야 한다.
- (5) 등록 시에는 다음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 (a) 등록 시 주무장관이 지정한 정보, 그리고
  - (b) 해당 관련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완전하면서 정확하다고 믿는다는 선언서
- (6) 세입/관세 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 (a) 해당 관련자에게 이 단락에 따른 등록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 (b) 담당관이 합리적이라고 여기는 기간 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것
- (7) 세입/관세 담당관의 판단으로 관련자가 이 단락에 따른 등록을 유발했지만 하위단락 (4)에 명시된 30일의 기간 종료 전에 등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담당관은 해당 관련자를 등록할 수 있다.
- (8) 세입/관세 담당관은 하위단락 (7)에 따라 관련자를 등록하는 경우 이를 해당 관련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9) 주무장관은 통지를 게시하여 관련자의 등록 방법을 지정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이 단락에 따른 선언을 할 수 있다.
- (10) 이 법의 이 파트의 목적을 위해
- (a) 관련자는 다음의 경우 "등록된 사람"이다.
    - (i) 이 단락에 따라 등록했거나, 세입/관세 담당관에 의해 등록되었다. 그리고
    - (ii) 등록 취소되지 않았다(단락 3 참조).
  - (b) 관련자는 다음의 경우 "등록 가능한 사람"이다.
    - (i) 이 단락에 따른 등록을 유발했지만,
    - (ii) 이 단락에 따라 등록하지 않았거나, 세입/관세 담당관에 의해 등록되지 않았다.

(c) 등록은 이 단락에 따른 등록을 지칭한다.

### 등록 취소

- 3 (1) 세입/관세 담당관은 다음 사항이 충족되는 경우 등록된 사람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 (a) 관련자가 등록 의무가 없으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
    - (i) 관련자가 등록 취소를 요청했다. 혹은
    - (ii) 관련자가 세입/관세 담당관에 의한 등록 취소일에 종료되는 12개월의 기간 내에 언제라도 등록하라는 요구를 받지 않았다. 혹은
  - (b) 관련자가 스스로 등록한 날에 등록하라는 요구를 받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등록하라는 요구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하위단락 (2)에 적용받는다.
- (2) 세입/관세 담당관은 다음의 경우 관련자의 등록을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 (a) CBAM의 미납부 금액, 혹은 관련자가 납부해야 하는 CBAM 부과금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존재하는 경우
  - (b) 관련자가 처리해야 하는 이 스케줄의 파트 3에 따른 미처리 신고서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 (c) 관련자가 등록 취소될 수 있는 날부터 시작하여 12개월의 기간 종료 전에 등록되어야 한다는 담당관의 판단이 있는 경우
- (3) 이 단락의 목적을 위해 관련자는 다음의 경우 해당 날에 "등록해야 한다".
- (a) 관련자가 해당 날에 등록을 유발하는 경우, 혹은
  - (b) 관련자가 해당 날이 속하는 월의 첫날에 단락 2(2)(a)에 따른 등록을 유발한 경우
- (4) 세입/관세 담당관은 등록취소 통지서를 발부하는 방식으로 관련자의 등록을 취소한다.
- (5) 등록취소 통지서에는 등록취소의 발효일(과거일 수도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 (6) 하위단락 (1)(a)에 따른 요청은 주무장관이 게시한 통지서에 지정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7) 관련자가 하위단락 (1)(a)에 따라 등록취소를 요청했고 그 요청이 거부되는 경우 세입/관세 담당관은 다음과 같은 통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 (a) 해당 요청이 거부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 (b) 사유를 명시한 통지서

### 변경되었거나 잘못된 정보의 통지

- 4 (1) 등록된 사람은 다음의 경우 HMRC에 통지해야 한다.
- (a) 단락 2에 따라 본인이 제공한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혹은
  - (b) 제공한 정보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파악한 경우

- (2) 통지는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정보가 잘못된 사실을 스스로 파악한 날부터 시작하여 30일의 기간 종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 (3) 통지는 주무장관이 게시한 통지서에 지정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CBAM 제품의 가액

- 5 주무장관은 이 스케줄의 이 파트의 목적을 위해 CBAM 제품의 가액을 결정하는 것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조항을 제정할 수 있다.

## 파트 3

### 납부, 회계기간, 신고서

#### 납부 및 회계기간

- 6 (1) 등록된 사람 또는 등록 가능한 사람은 각 회계기간과 관련하여 CBAM을 감안해서 납부해야 한다.
- (2) 회계기간은 3월, 6월, 9월, 12월 말에 종료되는 3개월의 기간이다.
- (3) 회계기간과 관련하여 납부는 회계기간 종료 후 두 번째 월의 마지막 영업일 종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 (4) 납부는 주무장관이 게시한 통지서에 지정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신고서

- 7 (1) 등록된 사람 또는 등록 가능한 사람은 각 회계기간에 대하여 HMRC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2) 이 단락에 따른 신고서는 관련 회계기간 종료 후 두 번째 월의 마지막 영업일 종료 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 (3) 주무장관은 이 단락에 따른 신고서에 무엇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조항을 제정할 수 있다.
- (4) 주무장관은 자신이 게시한 통지서에 다음 사항을 지정할 수 있다.
  - (a) 신고서 제출 방법
  - (b) HMRC가 제공한 디지털 설비를 사용하여 신고서에 표시된 CBAM의 부과금을 계산해야 한다. 단, 해당 예외 사항을 통지서에 지정할 수도 있다.

- 8 (1) 단락 7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은 오류를 정정할 목적으로만 HMRC에 통지하여 신고서를 수정할 수 있으며, HMRC에 추가 통지하여 신고서를 추가로 수정할 수도 있다.
- (2) 기본 값을 사용해 결정된 CBAM 제품 내 배출량에 대한 정보를 스케줄 2의 단락 10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해당 정보로 교체하기 위해 수정할 수는 없다.
- (3) 주무장관은 자신이 게시하는 통지서에 다음 사항을 지정할 수 있다.
- (a) 수정 방식, 그리고
  - (b) 수정 시점

#### 회계기간과 마감일 변경 권한

- 9 주무장관은 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을 개정할 수 있다.
- (a) 단락 6(2)/(3) 또는 7(2)
  - (b) 단락 6(2)의 이 단락에 따른 개정의 결과로서, 이 스케줄의 단락 7에 따른 신고서 미제출에 대한 처벌과 관련이 있는 FA 2021의 스케줄 24의 단락 2(1)에 나와 있는 표에서 5항

### 파트 4

#### 배출 결정과 입증, 그리고 탄소 가격 구제책

- 10 (1) 주무장관은 CBAM 제품에 내재된 배출량을 결정하고 입증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조항을 제정할 수 있다.
- (2) 이 단락에 따른 규정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 (a) 다양한 제품, 부문, 장소, 상황 또는 활동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조항을 제정한다.
  - (b) 측정, 샘플링 또는 분석에 대한 조항을 제정한다.
  - (c) 국제 기구를 비롯하여 제3자가 공표하는 정보나 기술 표준을 참조하여 조항을 제정한다.
  - (d) 데이터나 측정의 간극 처리에 대한 조항을 제정한다.
  - (e) 추정치를 산출하거나 표준 가치 또는 요인을 구하는 방법을 비롯하여 추정이나 표준 가치 또는 요인의 사용을 규정한다.
  - (f) 배출이 발생한 활동 과정에서 사용되거나 실시된 어떤 것의 처리에 대한 조항을 제정한다.
  - (g) 지정된 자연인이나 법인이 정보를 검증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을 제정한다.
- 11 (1) 재무부는 통지를 통해 CBAM 제품에 내재된 배출량을 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본값을 설정할 수 있다.
- (2) 이 단락에 따라 설정되는 기본값은 특히 다음과 같을 수 있다.

- (a) CBAM 제품에 내재된 배출이 발생한 장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b) CBAM 제품에 내재된 배출의 일부와 관련 있을 수 있다.
  - (3) 기본값은 단락 10의 규정에 따라 CBAM 제품에 내재된 배출량을 구하는 대신 이 값을 사용하는 경우 CBAM 담당자에게 어떤 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수준에서 설정할 수 있다.
  - (4) 단락 (3)에 언급된 "이익"에는 다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이 포함된다.
    - (a) CBAM 제품에 내재된 배출량이 기본값을 사용하여 구하는 경우 더 낮아짐
    - (b) 단락 10의 규정에 따라 배출량을 구하거나 검증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음
- 12 (1) 주무장관은 섹션 9(탄소 가격 규제책)에 따른 규제책을 결정하고 입증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조항을 제정할 수 있다.
- (2) 하위단락 (1)에 따른 규정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 (a) 다양한 제품, 부문, 장소, 상황 또는 활동과 관련하여, 혹은 탄소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장소를 참조하여 서로 다른 조항을 제정한다.
  - (b) 정보를 지정된 자연인이나 법인이 검증하거나, 제3자가 제공한 내용을 참조하여 검증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을 제정한다.
  - (c) 통화 환전에 대한 조항을 제정한다.

## 파트 5

### 중량 측정

- 13 (1) 주무장관은 CBAM의 목적을 위해 중량 측정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조항을 제정할 수 있다.
- (2) 이 단락에 따른 규정에는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한 조항이 포함될 수 있다.
- (a) 중량 측정 방법
  - (b) 중량 측정 시점
  - (c) 중량 입증 방법
  - (d) HMRC가 규정에 명시된 상황에서 합의 조건을 무시하는 것에 대한 조항을 비롯하여 중량을 측정하거나 입증하는 방법에 대한 HMRC와 특정인 간 합의
  - (e) 세입/관세 담당관이 CBAM 제품과 관련하여 중량에 대해 자체적인 평가를 실시하거나 최선의 판단을 내리고, 제3자의 평가나 판단 대신 그러한 평가나 판단을 활용하는 것
  - (f) 세입/관세 담당관이 CBAM 제품이나 샘플을 검사하거나 그 중량을 측정하는 것
  - (g) 추정이나 가정에 기반한 세입/관세 담당관의 중량 평가

## 파트 6

### 기록

#### 일반 요구사항

- 14 (1) 주무장관은 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을 지정된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다.
- (a) CBAM과 연계된 목적을 위해 지정된 사항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는 것, 그리고
  - (b) 지정 기간 동안 기록을 보존하는 것
- (2) 하위단락 (1)에 따른 규정에서는 규정에 명시된 조건이나 예외에 따라 어떤 형태나 수단으로든 기록을 보존하거나 그 속에 담긴 정보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규정에 따른 기록 보존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할 수 있다.
- (3) 하위단락 (1)에 따른 규정에 명시된 기간은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 (a) 기록이 회계기간과 관련 있는 경우 기록과 관련한 회계기간 종료 후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6년, 혹은
  - (b) 그 외의 경우 기록 생성일부터 시작하여 6년
- (4) 이 단락에서, "지정된"이라 함은 이 단락에 따른 규정에서 지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 지시

- 15 (1) 세입/관세 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등록된 사람 또는 등록 가능한 사람에게 지시할 수 있다.
- (a) 지시서에 명시된 대로 해당 기록을 보관하는 것
  - (b) 지정 기간 동안 기록을 보존하는 것
- (2) 담당관은 지시서에 명시된 기록이 CBAM 미납과 관련하여 CBAM 제품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면 하위단락 (1)에 따른 지시를 내릴 수 없다.
- (3) 하위단락 (1)에 따른 지시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 (a)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b) 지시를 통해 부과되는 요구사항의 미준수에 대하여 이 스케줄의 파트 12에 따른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 (c) 추가 지시를 통해 철회하거나 교체할 수 있다.
- (4) 하위단락 (1)(b)에 따른 지시서에 명시되는 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 파트 7

### 그룹 처리

#### 그룹 처리의 결과 및 의미

- 16 (1) 법인이 그룹의 회원으로서 처리되는 시점에 해당 법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a) CBAM 부과금을 지급해야 한다. 혹은
  - (b) CBAM과 관련하여 다른 종류의 의무를 지거나 적격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 해당 채무, 의무 또는 권리는 대표 회원이 가지는 것으로 처리한다.
- (2) 하위단락 (1)의 목적을 위해
- (a) "CBAM과 관련한" 의무 또는 적격한 권리는 이 법의 이 파트에서 제정된 조항에 따른 의무 또는 적격한 권리이다.
  - (b) 법인의 "적격한 권리"는 법인과 그룹의 대표 회원이 동 그룹의 회원으로 처리되기 시작한 후 발생하는 권리이다.
- (3) 대표 회원이 CBAM 부과금을 납부해야 할 때 그룹의 회원으로 처리되는 모든 법인은 해당 부과금이 미납된 상태에서 그룹의 회원으로 처리되는 법인과 함께 대표 회원이 납부해야 하는 부과금에 대해 공동 연대하여 책임진다.
- (4) 이 단락에 명시된 "CBAM 부과금"에는 해당 금액이 CBAM 부과금이라는 점에 근거하여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포함된다.
- 17 단락 16의 목적을 위해
- (a) 법인은 이 스케줄의 이 파트의 다음 조항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항상 자신이 속해 있는 그룹의 회원으로서 처리해야 한다.
  - (b) 그룹의 대표 회원은 항상 이 조항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속해 있는 법인체이다.

#### 그룹 처리에 적격한 법인

- 18 (1) 다음의 경우 2개 이상의 법인이 그룹의 회원으로서 처리에 적격하다("적격한 법인").
- (a) 이 법인들은 모두 법인체이다.
  - (b) 최소 하나의 법인이 영국에 설립되어 있는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
  - (c) 이 법인들은 모두 동일인의 지배를 받는다.
- (2) 법인은 다음의 경우 그룹의 대표 회원으로서 자격을 가질 수 있다.
- (a) 영국 내 거주자이다. 혹은

- (b) 영국에 영구 사업체가 있다.
- (3) 법인은 그룹과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 적격한 법인이 아니다.
  - (a) 다른 그룹의 회원이다. 혹은
  - (b) 이 단락의 목적을 위해 주무장관이 게시한 통지서에 설명되어 있는 법인이다.
- 19 단락 18의 목적을 위해
  - (a) 다음의 경우 2개 이상의 법인이 동일인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 (i) 이들 중 하나의 법인이 상대방 각각을 지배한다.
    - (ii) 법인체인지 개인인지 상관없이 한 명이 이들 모두를 지배한다. 혹은
    - (iii) 파트너십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2명 이상의 개인이 이들 모두를 지배한다.
  - (b) 다음의 경우 하나의 법인체가 다른 법인체를 지배하는 것이다.
    - (i) 법률에 따라 해당 법인의 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혹은
    - (ii) 회사법 2006의 섹션 1159와 스케줄 6의 의미 내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지주회사이다.
  - (c) 개인 또는 여러 개인들은 만약 회사라면 이러한 조항의 의미 내에서 해당 법인의 지주회사인 경우에만 법인체를 지배한다.

#### 그룹 처리 신청

- 20 (1) 2명 이상의 적격한 법인이 그룹의 회원으로서 처리해 줄 것을 세입/세관 담당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2) 이 단락에 따른 신청서에는 어떤 법인이 대표 회원인지를 명시해야 한다.
- (3) 세입/세관 담당관은 이 단락에 따른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신청인 또는 대표 회원인 법인에게 통지하여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a) 신청을 수락할지, 거부할지를 확정한다. 그리고
  - (b) 신청을 수락하는 경우 신청인이 그룹의 회원으로서 처리될 수 있는 날짜를 명시한다.
- (4) 담당관은 신청 접수일부터 시작하여 90일의 기간 내에 통지해야 한다.
- (5) 하위단락 (3)(b)에 언급된 날짜는 그러한 기간 이내여야 한다.
- (6) 담당관은 다음의 경우에만 이 단락에 따른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 (a) 담당관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경우
    - (i) 신청이 적격한 법인이 아닌 법인과 관련하여 제출되었다. 혹은
    - (ii) 신청서에 대표 법인으로서 적격하지 않은 법인을 대표 법인으로 명시했다. 혹은
  - (b) 세입 보호를 위해 신청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룹 처리의 수정 또는 종료 신청

- 21 (1) 2개 이상의 법인이 그룹의 회원으로 처리되는 경우 대표 회원은 다음 사항을 세입/관세 담당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a) 다른 적격한 법인을 그룹의 회원으로서 처리하는 것
  - (b) 그룹의 어떤 회원을 대표 회원으로 지정할지를 변경하는 것
  - (c) 그룹의 회원으로서 모든 법인의 처리를 종료하는 것
- (2) 세입/관세 담당관은 이 단락에 따른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신청인뿐만 아니라 하위단락 (1)(b) 내에서 제안된 새로운 대표 회원에게 통지하여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a) 신청을 수락할지, 거부할지를 확정한다. 그리고
  - (b) 신청을 수락하는 경우 신청 사항의 발효일을 명시한다.
- (3) 담당관은 신청 접수일부터 시작하여 90일의 기간 내에 통지해야 한다.
- (4) 하위단락 (2)(b)에 언급된 날짜는 그러한 기간 이내여야 한다.
- 22 (1) 세입/관세 담당관은 세입 보호를 위해 신청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단락 21(1)(a) 또는 (b)에 따른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 (2) 세입/관세 담당관은 다음의 경우에만 단락 21(1)(c)에 따른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 (a) 단락 23에 따른 그룹 처리 종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안이 아닌 경우
  - (b) 담당관이 세입 보호를 위해 신청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HMRC에 의한 그룹 처리 종료

- 23 세입/관세 담당관은 다음의 경우 그룹의 회원으로서 처리되는 법인에게 통지하여 통지서에 명시된 시점부터 그룹의 회원으로서 모든 법인의 처리를 종료할 수 있다.
- (a) 담당관의 판단으로 해당 법인이 그룹과 관련하여 적격한 법인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경우, 혹은
  - (b) 담당관이 세입 보호를 위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24 (1) 법인과 관련하여 단락 23(a)에 따른 통지서에 명시되는 시간은 통지서 제공 이전 시점일 수 있다. 단, 해당 법인이 더 이상 적격한 법인이 아닌 시점 이전일 수는 없다.
- (2) 단락 23(b)에 따른 통지서에 명시된 시간은 회원에게 통지서를 제공하는 날 이전 시점일 수 없다.

대표 회원의 그룹 처리 종료

25 (1) 다음의 경우

- (a) 법인체가 단락 21(1)(c) 또는 23에 따른 그룹의 회원으로서 더 이상 처리되지 않는 경우,
- (b) 해당 시점 직전에 법인이 그룹의 대표 회원이 된 경우,
- (c) 해당 시점 직후에 그룹의 회원으로서 계속 처리될 법인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 그리고
- (d) 이러한 법인 중 어떤 법인도 단락 21(1)(b)에 따른 대표 회원이 되지 못하는 경우

세입/관세 담당관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단락 (c)에 명시된 법인 중 하나에 통지하여 해당 법인을 통지서에 명시된 시점부터 대표 회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 (2) 이 단락에 따른 통지서에 명시된 시간은 통지서 제공 이전 시점일 수 있다.

적격성 관련 통지

- 26 (1) 그룹의 회원으로서 처리되는 법인체는 더 이상 적격한 법인이 아닌 경우 적격한 법인의 자격이 상실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30일의 기간 종료 전에 HMRC에 통지해야 한다.

- (2) 그룹의 대표 회원인 법인체는 적격한 대표 회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대표 회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30일의 기간 종료 전에 HMRC에 통지해야 한다.

이 파트에 따른 신청 및 통지의 정정

- 27 (1) 법인체가 이 스케줄의 이 파트에 따른 신청서나 통지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 단락을 적용한다.

- (2) 다음의 경우

- (a) 신청서나 통지서에 명시된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혹은
- (b) 법인이 제공한 정보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게 되는 경우

해당 법인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대한 빨리 HMRC에 통지해야 한다. 단, 상황에 따라 정보가 변경되거나 잘못된 정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30일의 기간 종료 전에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 (3) 이 단락에 따른 통지는 주무장관이 게시한 통지서에 지정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파트에 따른 신청 및 통지

- 28 이 스케줄의 이 파트에 따른 신청이나 통지는 주무장관이 게시한 통지서에 지정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게 지정된 정보나 선언을 포함해야 한다.

**파트 8**

사업 활동의 인위적 분리

- 29 (1) 이 단락은 CBAM을 회피하기 위해 2인 이상이 실시하는 사업 활동의 인위적 분리를 유지하거나 생성하는 것을 예방할 목적으로 적용한다.
- (2) 세입/관세 담당관은 다음 사항이 충족되는 경우 특정인을 지명하여 지시를 내릴 수 있다.
- (a) 관련자가 사업 과정에서 CBAM 제품을 영국에 수입하고 있다.
  - (b) 관련자가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활동이 특정 활동의 일부일 뿐이며, 그 외 활동은 2인 이상이 동시에 또는 예전에(혹은 둘 모두) 실시했다.
  - (c)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관련자들이 CTA 2010의 섹션 1122의 의미 내에서 연결되어 있는지("연결된" 사람) 여부와 관련하여, 이러한 사람이 실시하는 활동이 인위적으로 분리되었거나 분리된다. 그리고
  - (d) 이러한 사람의 모든 활동을 감안한 경우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 1명은 지시 시점에 단락 2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 (3) 하위단락 (2)에 따른 지시의 효과는 이 법의 이 파트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다.
- (a) 지시서에 지명된 사람은 지시서에 설명된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단일 과세대상자("과세대상자")로 처리해야 한다.
  - (b) 과세대상자는 지시 발령일 또는 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을 수도 있는 그보다 더 이르거나 늦은 날짜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한다.
    - (i) 지시 발령일부터 시작하여 14일의 기간 이내에 지시서에 지명된 사람들이 공동으로 지정한 피지명인 중 한 명의 명의로 지시를 내린 세입/관세 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혹은
    - (ii) 그러한 이름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담당관의 결정에 따른 명의로 제출하여
  - (c) 과세대상자가 실시하는 활동 과정에서 지시서에 지명된 사람이 또는 그 대리인이 CBAM 제품을 수입하는 것은 과세대상자가 사업 과정에서 CBAM 제품을 수입하는 것으로 처리해야 한다.
  - (d) 지시서에 지명되노 각 사람은 과세대상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는 CBAM에 대하여 공동 연대하여 책임진다.
  - (e) 과세대상자가 이 법의 이 파트에 따라 부과되는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지시서에 개별적으로 지명된 각 사람의 미준수로 처리해야 한다.

- (4) 하위단락 (3)(b)에 따라 지시서에 명시될 수도 있는 가장 빠른 날짜는 지시서에 지명된 사람이 해당 날짜에 단일 과세대상자로 처리된 경우 단락 2에 따른 등록을 처음으로 유발한 날짜이다.
- (5) 하위단락 (6)은 하위단락 (2)에 따라 지시가 내려진 후 세입/관세 담당관의 판단으로 다음과 같이 보이는 경우 적용한다.
  - (a) 지시서에 지명되지 않은 사람이 지시서에 설명된 사업 활동의 일부라고 간주되는 활동 과정에서 CBAM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 (b) 지시서에 지명된 사람이 지시서에 더 이상 지명되어 있지 않다.
- (6) 세입/관세 담당관은 지시를 통해 다음과 같이 되도록 초기 지시를 수정할 수 있다.
  - (a) 하위단락 (5)(a)에 언급된 사람을 지명한다. 혹은
  - (b) 하위단락 (5)(b)에 언급된 사람을 상황에 따라 초기 지시서에서 삭제한다.
- (7) 하위단락 (6)(a)에 따른 수정의 발효일은 다음과 같다.
  - (a) 지시서에 설명된 사업 활동의 일부로 간주되는 활동 과정에서 CBAM 제품의 수입을 시작한 날짜, 혹은
  - (b) 더 늦은 경우, 초기 지시서에 명시된 단일 과세대상자가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되는 날짜
- (8) 하위단락 (6)(b)에 따른 수정의 발효일은 지시서에 명시된 날짜이다.
- (9) 하위단락 (2)에 따른 지시와 하위단락 (3)(b)(ii)에 따른 결정은 지시서에 지명된 사람 각각에게 제공해야 한다.
- (10) 하위단락 (6)(a)에 따른 지시는 초기 지시서 수정본에 지명된 사람 각각에게 제공해야 한다.
- (11) 하위단락 (6)(b)에 따른 지시는 다음과 같은 사람에게 제공해야 한다.
  - (a) 초기 지시서 수정본에 지명된 사람 각각, 그리고
  - (b) 초기 지시서에서 삭제된 사람
- (12) 등록된 사람은 이 단락에 따른 지시서에 의거해 단일 과세대상자의 일부가 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더 이상 등록된 사람이 아닌 것으로 처리해야 한다.

## 파트 9

### 사망, 무능력, 파산

- 30 (1) 이 단락은 개인 자격의 등록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정상적인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P)이 등록된 사람의 등록과 관련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적용한다.
- (2) 이 단락을 적용하는 경우 P는 사업을 수행하기 시작한 날짜부터 시작하여 21일의 기간 종료 전에 자신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HMRC에 통지해야 한다.
- (3) 통지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 (a) 사업을 수행해도 된다는 P의 관할당국 인가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한다.
  - (b) 등록된 사람의 사망이나 무능력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한다.
- (4) 주무장관은 게시하는 통지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 (a) 통지서에 포함할 정보의 특정 항목 및 통지서에 첨부할 증빙자료
  - (b) 통지 제공 방식
- (5) 이 단락을 적용하는 경우 HMRC는 하위단락 (2)에 따른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시작하여 최대 6개월의 기간 동안 CBAM의 목적을 위해 등록된 사람인 것처럼 P를 대우할 수 있다.
- (6) HMRC 담당관은 P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하위단락 (5)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31 (1) 이 단락은 등록된 사람이 파산 절차를 거치고 관련자("P")가 해당 등록된 사람과 관련하여 파산관재인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적용한다.
- (2) 이 단락을 적용하는 경우 P는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파산관재인인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한 날부터 시작하여 21일의 기간 종료 전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대한 빨리 파산 절차를 HMRC에 통지해야 한다.
- (3) 통지 시에는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파산관재인인의 역할을 수행해도 된다는 P의 관할당국 인가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 (4) 주무장관은 게시하는 통지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할 수 있다.
- (c) 통지서에 첨부할 증빙자료의 특정 항목
  - (d) 통지 제공 방법
- (5) 이 단락을 적용하는 경우 HMRC는 관련 날짜 후에(당일 포함) CBAM의 목적을 위해 등록된 사람인 것처럼 P를 대우할 수 있다. 이 하위단락에서, "관련 날짜"라 함은 하위단락 (2)에 따른 21일 기간이 종료되는 날을 의미한다.
- (6) P를 등록된 사람인 것처럼 하위단락 (5)에 따라 대우하는 경우

- (a) 파산 절차 시작일 이전 시점에 발생한 CBAM 납부에 대한 등록된 사람의 책임은 등록된 사람이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지속된다.
  - (b) 파산 절차 시작일 이후(당일 포함) 시점에 발생한 CBAM 납부에 대한 등록된 사람의 책임은 해당 절차의 경비로 간주해야 한다. 단, 하위단락 (7)(b)(vii) 이내에 있는 절차의 경우는 예외이다.
- (7) 이 단락에서,
- (a) "파산관재인"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 (i) 행정관리 수탁인
    - (ii) 행정관리자
    - (iii) 청산자
    - (iv) 법원이나 채권자가 임명한 수탁인
    - (v) 파산 관련 신탁관리자
    - (vi) 부동산 몰수 관련 신탁관리자(또는 임시 신탁관리자)
    - (vii) 영국 이외 국가 또는 영토의 법률에 따라 동등한 자격의 행위를 수행하는 사람
  - (b) "파산 절차"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 (i) 행정관리
    - (ii) 행정적 재산관리
    - (iii) 파산
    - (iv) 재산관리
    - (v) 몰수
    - (vi) 청산
    - (vii) 영국 이외 국가 또는 영토의 법률에 따른 동등한 절차

## 파트 10

### 회수

#### 만기 채무로서의 회수

32 CBAM은 왕실에 납부해야 하는 부채로서 회수할 수 있다.

#### CBAM 부과금 평가

- 33 (1) 하위단락 (2)는 세입/관세 담당관의 판단으로 다음과 같이 보이는 경우 적용한다.
- (a) 어떤 기간이 회계기간으로서, 이 기간을 기준으로 CBAM 채무가 등록된 사람 또는 등록 가능한 사람에게 있다.
  - (b) 관련자가 그러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책임져야 하는 CBAM 부과금이 만료되었다. 그리고
  - (c) 관련자의 관련 미이행이 있었다(하위단락 (3) 참조).
- (2) 세입/관세 담당관은
- (a)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 (i) 관련자가 납부해야 하는 해당 기간의 CBAM 부과금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최선의 판단을 내려 관련자가 납부해야 하는 해당 기간의 부과금을 평가한다.
    - (ii) 그 외의 경우 관련자가 납부해야 하는 해당 기간의 부과금을 평가한다. 그리고
  - (b) 그러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부과금을 관련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3) "관련 미이행"은 다음과 같다.
- (a) 단락 2(등록) 또는 단락 4(등록 정보 업데이트 또는 정정)의 요구사항 미준수
  - (b) 단락 2 또는 4 준수와 관련하여 불완전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 (c) 단락 7에서 요구하는 신고서 미제출
  - (d) 단락 7에서 요구하는 신고서를 검증하는 데 필요한 문서 보관 또는 설비 제공의 미이행
  - (e) 단락 7 준수와 관련하여 불완전하거나 잘못된 신고서 제출
  - (f) 단락 14 또는 단락 15(기록 보관 및 보존)에서 부과하는 요구사항 미준수
  - (g) 이 법의 이 파트에서 부과하는 요구사항 준수와 관련하여 완전하거나 정확한 정보를 HMRC에 제공하지 못함
  - (h) 미준수가 단락 (a)~(g) 내의 미이행 사항인 경우 요구사항 준수와 관련하여 부당한 지연
- 34 (1) 하위단락 (2)는 다음의 경우 적용한다.
- (a) 세입/관세 담당관은 관련자가 회계기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 인해 단락 33(2)에 따라 해당 기간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 (b) 평가된 CBAM이 납부되었지만, 해당 기간에 대한 적절한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 (c) 후속 회계기간에 대한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음으로 인해 세입/세관 담당관은 후속 기간과 관련하여 다른 평가("후속 평가")를 실시한다.
- (2) 세입/관세 담당관은 이전 기간에 대한 적절한 신고서가 없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후속 기간만 고려했다면 적절하다고 판단했을 부과금보다 더 높은 CBAM 부과금을 후속 평가서에 명시할 수 있다.

### 보충 평가

- 35 (1) 하위단락 (2)는 다음의 경우 적용한다.
- (a) 평가를 단락 33(2)에 따라 관련자에게 통지했다.
  - (b) 세입/관세 담당관의 판단으로 납부금으로 평가되었어야 하는 금액이 이미 평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 (2) 세입/관세 담당관은
- (a) 자신의 판단으로 관련자가 납부해야 하는 CBAM 부과금에 대해 보충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b) 그러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관련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단락 33 및 35에 따른 평가에 대한 추가 조항

- 36 (1) 단락 33 또는 35에 따라 평가하여 관련자에게 고지된 금액은 해당 관련자가 납부해야 하는 CBAM 부과금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여 회수할 수 있다.
- (2) 그러나 평가금이 취소되거나 감액되는 경우에는 하위단락 (1)을 적용하지 않는다.

### 평가 시간 제한

- 37 (1) 관련 시간 이후에는 단락 33 또는 35에 따른 평가를 실시할 수 없다.
- (2) 하위단락 (3)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시간은 다음 중 더 빠른 시점이다.
- (a) 평가와 관련한 회계기간 종료일부터 4년의 기간 종료 시점
  - (b) 정당화하기 위해 평가를 실시하는 세입/관세 담당관의 의견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세입/관세 담당관이 알게 되는 날부터 시작하여 1년의 기간 종료 시점
- (3) 다음과 같은 CBAM 손실과 관련한 사례에서 관련자의 납부 부과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 (a) 관련자가 고의로 초래하는 것, 혹은
  - (b) 관련자가 단락 2 또는 4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
- 관련 시간은 평가와 관련한 회계기간 종료일부터 20년의 기간 종료 시점이다.
- (4) 하위단락 (3)에서, 관련자가 초래하는 손실에는 해당 관련자를 대리하는 다른 사람이 초래하는 손실이 포함된다.

## 파트 11

### 반환금

#### 과다 납부된 세금의 반환금

- 38 (1) 이 단락은 관련자(P)가 납부 세금이 아닌 CBAM의 방식으로 부과금을 주무장관에게 납부한 경우 적용한다.
- (2) 주무장관은 P가 청구를 제기할 때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 (3) 이 단락에 따른 청구는 주무장관이 게시한 통지서에 지정된 방식으로 제기해야 하고, 그렇게 지정된 정보로 뒷받침해야 한다.
- (4) 이 단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무장관은 납부 세금이 아니라는 사유로 CBAM의 방식으로 납부된 금액을 반환할 책임이 없다.
- (5) 이 단락은 단락 39에 적용받는다.

#### 반환금 등에 대한 보충 조항

- 39 (1) 주무장관은 CBAM 반환금 청구 제기 시 다음과 같은 금액의 반환금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 (a) 청구 제기 4년 이상 전에 납부된 금액
- (b) 관련자가 해당 금액과 관련하여 세액공제 자격을 갖춘 경우의 금액
- (2) 해당 반환금으로 인해 청구인이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은 CBAM 부과금 반환금 청구에 대한 항변이다.
- 40 (1) 이 단락은 다음의 경우 적용한다.
- (a) 관련자(P)에게 반환할 금액이 CBAM의 방식으로 납부되었다(단락 39(2)와는 별도).
- (b) 주무장관에게 납부한 해당 부과금의 납부 비용 전부 또는 일부는 실제로 P가 아닌 관련자가 부담했다.
- (2) CBAM과 관련한 조항의 운영에 대한 P의 사례에서 잘못된 가정을 설정함으로써 인해 P가 손실이나 손해를 발생시켰거나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 관련 결정을 내릴 때 해당 손실이나 손해를 무시해야 한다. 단, 정량화된 금액은 예외이다.
- (3) 하위단락 (2)에서,
- (a) "정량화된 금액"이라 함은 P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잘못된 가정 설정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P가 입증하는 손실이나 손해와 관련해 P에게 적절하게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P가 입증하는 금액(해당하는 경우)을 의미한다.
- (b) "관련 결정"이라 함은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단락 39(2)의 목적을 위한 결정을 의미한다.

- (i) 반환금으로 인해 P가 이익을 취하는지 여부 또는 그 범위, 혹은
  - (ii) P의 이익이 부당한지 여부 또는 그 범위
- (4) 하위단락 (2)에 언급된 CBAM 관련 조항은 다음을 지칭한다.
- (a) 세금 또는 세금과 연계된 사항과 관련이 있는 법률에 의거해 제정된 조항
  - (b) 그러한 조항의 목적을 위해 주무장관이 게시하는 통지

### 변제 약속

- 41 (1) 주무장관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단락 39(2)의 목적을 위해 변제 약속을 무시할 것을 규정에 따라 규정할 수 있다.
- (a) 이 약속에는 규정에서 요구할 수도 있는 해당 조항이 담겨 있다.
  - (b) 이 약속은 규정에 따라 주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할 수도 있는 약속 관련 조항에 대한 준수 약속으로 뒷받침된다.
- (2) 이 단락에서, "변제 약속"이라 함은 CBAM 반환금 청구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약속을 의미한다.
- (a) 관련자가 청구에 따른 부담금 반환으로 인해 부당이익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할 목적으로 관련자가 실시한 약속, 그리고
  - (b) 주무장관에게 원래 납부하기로 한 해당 금액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실제로 부담한 관련자의 변제금을 제공하겠다는 약속
- (3) 이 단락에 따른 규정에서는 특히 다음 조항이 담긴 변제 약속을 요구하는 조항을 제정할 수 있다.
- (a) 관련 반환 이후 지정 기간 내에 변제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
  - (b) 약속에 따라 변제되지 않는 금액을 주무장관에게 반환하는 것에 관한 조항
  - (c) 변제하거나 주무장관에게 반환하겠다는 약속에 따른 요구사항의 목적을 위해 해당 금액과 동일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반환된 금액에 대해 주무장관이 지급한 이자를 요구하는 조항
  - (d) 주무장관이나 세입/관세 담당자를 위해 지키고 이행할 수 있도록 약속과 관련한 지정 설명이 담긴 기록을 요구하는 조항
  - (e) 단락 (a)~(d)에 따라 제정된 조항의 목적을 위해 지정된 사람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 (4) 이 단락에 따른 규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 (a) 규정에 따라 주무장관에게 제공된 약속의 형태, 방법, 시점에 대한 조항을 제정한다.
  - (b) 규정에 따라 주무장관이 결정할 해당 사안을 규정한다.

### 초과 반환금에 대한 평가

- 42 (1) 하위단락 (3)은 다음의 경우 적용한다.
- (a) 해당 금액이 CBAM 반환의 방식으로 관련자에게 언제라도 지급되었다.
  - (b) 지급된 해당 금액이 그 사람에게 반환하는 시점에 주무장관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초과했다.
- (2) 하위단락 (3)은 관련자가 단락 41(3)(b), (c) 또는 (e)에 따른 규정에서 부과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주무장관에게 어떤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3) 주무장관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 (a) 자신의 판단으로, 초과금(하위단락 (1)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미수금(하위단락 (2)에 해당하는 경우)을 평가한다.
  - (b) 그러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관련자에게 통지한다.
- (4) 하위단락 (5)에 따라, 다음의 경우
- (a) CBAM 반환금과 관련하여 이 단락에 따라 관련자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그리고
  - (b) 그 사람이 지급해야 하는 CBAM 부과금과 관련하여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이 스케줄의 파트 10에 따른 권한이 주무장관에게 있는 경우
- 평가들을 합쳐서 하나의 평가로서 관련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 (5) 하위단락 (4)에 따라 합쳐진 평가에 대한 통지는 CBAM 반환과 관련하여 평가할 금액을 별도로 식별해야 한다.

### 보충 평가

- 43 (1) 하위단락 (2)는 다음의 경우 적용한다.
- (a) 단락 42에 따라 관련자에게 평가를 통지했다. 그리고
  - (b) 세입/관세 담당자의 판단으로 미수금으로 평가되었어야 하는 금액이 이미 평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 (2) 세입/관세 담당관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 (a) 단락 42에 따른 평가를 실시했을 수 있는 마지막 날 전에(당일 포함)(단락 42 참조) 관련자가 지급해야 하는 CBAM 부과금에 대해 보충 평가를 실시한다. 그리고
  - (b) 그러한 보충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그 사람에게 해당 금액을 통지한다.

단락 42 및 43에 따른 평가에 대한 추가 조항

- 44 (1) 단락 42 또는 43에 따라 해당 금액을 평가하여 관련자에게 통지한 경우 해당 관련자가 납부해야 하는 CBAM 부과금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여 해당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 (2) 그러나 평가금이 취소되거나 감액된 경우에는 하위단락 (1)을 적용하지 못한다.

평가 시간 제한

- 45 단락 42 또는 43에 따른 평가는 정당화하기 위해 평가를 실시하는 세입/관세 담당관의 의견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세입/관세 담당자가 알게 된 후 2년 넘게 지나서 실시할 수 없다.

**파트 12**

처벌

이 스케줄과 관련하여 납부해야 하는 벌금

- 46 이 스케줄의 이 파트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 스케줄과 관련하여 납부해야 하는 벌금을 규정한다.
- (a) 단락 47은 이 스케줄의 단락 2에 따라 HMRC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부과하거나 HMRC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FA 2008의 스케줄 41을 개정한다.
  - (b) 단락 48은 이 스케줄의 단락 7에 따른 신고서 미제출에 대한 처벌을 부과하도록 FA 2021의 스케줄 24를 개정한다.
  - (c) 단락 49는 이 스케줄의 단락 7에 따른 신고서 및 그 외 문서 내 오류에 대한 처벌을 부과하도록 FA 2007의 스케줄 24를 개정한다.
  - (d) 단락 50은 CBAM 미납부에 대한 처벌을 개정하도록 FA 2021의 스케줄 26을 개정한다.
  - (e) 단락 51은 다음에 따른 통지 미제공에 대한 처벌을 부과한다.
    - (i) 단락 4(변경되었거나 잘못된 등록 정보)
    - (ii) 단락 26 또는 27(그룹 처리)
    - (iii) 단락 9(사망, 무능력 또는 파산)
  - (f) 단락 52는 이 스케줄의 파트 6 또는 그 파트의 규정에 따라 기록을 보관하거나 보존하지 않는 것에 대한 처벌을 부과한다.
- 47 (1) FA 2008의 섹션 41(처벌: 미통지 및 특정 VAT/소비세 범법행위)은 하위단락 (2) 및 (3)에 따라 개정한다.

(2) 단락 1의 표(미통지 등)에서, 기후변화 부과금과 관련된 항목 뒤에 다음을 삽입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	FA 2026의 스케줄 2의 단락 2에 따른 관련자의 의무"
-----------	-----------------------------------

(3) 단락 7에서, 하위단락 (9) 뒤에 다음을 삽입한다.

"(10)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관련이 있는 FA 2026의 스케줄 2의 단락 2에 따른 관련 의무의 경우 잠재적 수입 손실액은 다음과 같은 기간에 대하여 P가 납부해야 하는 (해당하는 경우) 세금액이다.

(a) FA 2026의 스케줄 2의 단락 2(4)에 지정된 기간의 종료일부터 시작하고

(b) P가 FA 2026의 스케줄 2의 단락 2에 따라 등록하거나 HMRC가 P의 등록 의무를 완벽하게 인지하게 되는 날에 종료되는 기간"

(4) FA 2008의 스케줄 41의 단락 16(1)(처벌: 미통지 등)은 "해야 한다, 한다" 대신 "할 수 있다, 해도 된다"를 사용한 것처럼 CBAM에 적용할 수 있다.

48 FA 2021의 스케줄 24(신고서 미제출 등에 대한 처벌)에 나와 있는 단락 2(1)의 표에서, 항목 4 뒤에 다음을 삽입한다.

"5 탄소국경	-	FA 2026의 스케줄 2의 -". 단락 7에 따른 신고서
---------	---	-------------------------------------

49 (1) FA 2007의 스케줄 24(오류에 대한 처벌)에 나와 있는 단락 1의 표에서, 기후변화 부과금과 관련한 항목 뒤에 다음을 삽입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	FA 2026의 스케줄 2의 단락 7에 따른 신고서"
-----------	-------------------------------

(2) FA 2007의 스케줄 24(오류에 대한 처벌)의 단락 13(1)은 "해야 한다, 한다" 대신 "할 수 있다, 해도 된다"를 사용한 것처럼 CBAM에 적용할 수 있다.

50 FA 2021의 스케줄 26(세금 미납에 대한 처벌)에 나와 있는 단락 1(1)에서,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표 뒤에 다음을 삽입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

1	FA 2026의 스케줄 2의 단락 6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CBAM 부과금	부과금을 납부해야 하는 날짜로서 FA 2026의 스케줄 2의 단락 6에서 결정한 날짜
2	신고서 미제출에 대하여 HMRC가 실시한 평가서에 표시된 CBAM 부과금(단락 3 참조)	문제시되는 신고서에 표시된 경우 해당 금액을 납부했어야 하는 날짜
3	신고서 개정본에 표시된 CBAM 부과금	개정일 이후 30일 지난 날짜

"탄소국경조정제도

4	신고서 미제출 이외 사항에 대하여 HMRC가 실시한 평가서에 표시된 CBAM 부과금(단락 3 참조)	평가일 이후 30일 지난 날짜"
---	---	-------------------

- 51 (1) 관련자(P)는 다음에 따른 통지 실시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받는다.
- (a) 단락(변경되었거나 잘못된 등록 정보)
  - (b) 단락 26 또는 27(그룹 처리)
  - (c) 파트 9(사망, 무능력 또는 파산)
- (2) 처벌은 다음과 같다.
- (a) 고정 벌금 £500, 그리고
  - (b) P가 허가를 받은 마지막 날 이후 요구되는 통지를 계속 하지 못하는 날을 일수로 계산하여 일일 벌금 £40
- 52 관련자(P)는 이 스케줄의 파트 6 또는 그 파트의 규정에 따라 기록 보관 또는 보존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500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 53 (1)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단락 51 또는 52에 따라 벌금을 납부해서는 안 된다.
- (a) P는 세입/세관 담당자 또는 항소 시 재판소에게 미이행에 대한 합리적인 변명이 있음을 입증한다. 혹은
  - (b) 처벌로 인해 P가 위험을 이중으로 져야 할 수 있다.
- (2) 하위단락 (1)(a)의 목적을 위해
- (a)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합리적인 변명이 되지 못한다.
  - (b) P가 다른 사람을 활용하여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는 P가 미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합리적인 변명이 되지 못한다.
  - (c) P에게 미이행에 대한 합리적인 변명이 있었지만 그 변명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명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은 후 과도한 지연 없이 미이행이 해결될 때만 P의 변명이 계속 통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 (3) 하위단락 (1)(b)의 목적을 위해, P가 미이행으로 간주되는 행위를 사유로 다음과 같은 경우 처벌로 인해 위험을 이중으로 지게 된다.
- (a)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혹은
  - (b) 단락 51 또는 52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그 외 조항에 따라 처벌 대상으로 판단되었다.

단락 51 또는 52에 따른 처벌: 행정관리 및 보충 조항

- 54 이 스케줄의 이 파트의 다음 단락은 단락 51 또는 52에 따른 처벌과 관련하여 적용한다.
- 55 (1) 관련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세입/관세 담당관은 다음과 같이 한다.
- (a) 벌금을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 (b) 그러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관련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2) 하위단락 (3)은 다음의 경우 적용한다.
- (a) 세입/관세 담당자가 처벌을 평가했다. 그리고
  - (b) 담당관의 판단으로 평가되었어야 하는 금액이 이미 평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 (3) 담당관은 다음과 같이 한다.
- (a) 벌금에 대한 보충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 (b) 그러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관련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4) 하위단락 (1) 또는 (3)에 따라 평가하여 관련자에게 통지한 금액은 해당 관련자가 납부해야 하는 CBAM 부과금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여 회수할 수 있다.
- (5) 그러나 평가금이 취소되거나 감액된 경우에는 하위단락 (4)를 적용하지 않는다.
- (6) 처벌을 초래하는 행위가 하위단락 (1) 또는 (3)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종료되었다는 사실은 그러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세입/관세 담당관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56 (1) 하위단락 (2)는 다음의 경우 적용한다.
- (a) 세입/세관 담당관이 단락 55(1) 또는 (3)에 따른 벌금에 대하여 관련자를 평가한다. 그리고
  - (b) 관련자는 처벌을 초래하는 행위와 관련한 회계기간에 대하여 이 스케줄의 파트 10에 따른 평가도 받는다.
- (2) 단락 55(1) 또는 (3), 혹은 이 스케줄의 파트 10에 따른 평가를 합쳐서 하나의 평가로서 관련자에게 통지할 수도 있다.
- (3) 하위단락 (2)에 따라 합쳐진 평가의 통지는 평가할 처벌을 별도로 식별해야 한다.
- 57 (1) 단락 51(2)(b)에 따른 일일 벌금에 대하여 단락 55(1) 또는 (3)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통지서 제공일보다 더 늦지 않게 해당 금액 평가일을 해당 금액의 통지서에 명시해야 한다.
- (2) 처벌을 초래하는 미이행이 그 날짜 이후에도 지속되는 경우 지속되는 미이행과 관련하여 단락 (1) 또는 (3)에 따라 추가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3) 하위단락 (4)는 다음의 경우 적용한다.
- (a) 벌금 통지서에 하위단락 (1)에 따른 날짜가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 (b) 문제시되는 미이행이 이 하위단락의 목적을 위해 통지서에 명시되어 있을 수도 있는 해당 기간 내에 해결된다.
- (4) 미이행은 하위단락 (1)에 따라 명시된 날짜에 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 58 (1) 처벌을 평가하는 세입/관세 담당관 또는 항소 시 재판소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벌금을 감액(면제 포함)할 수 있다.
- (2) 하위단락 (1)에 따라 세입/관세 담당관이 감액한 벌금과 관련한 항소 시, 재판소는 담당관의 감액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59 (1) 단락 55(1) 또는 (3)에 따른 평가는 관련 기간 종료 후 실시할 수 없다.
- (2) 하위단락 (3)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기간은 처벌을 초래하는 미이행이 시작된 날부터 시작하여 4년의 기간이다.
- (3) 다음과 같은 CBAM 손실과 관련한 사례에서 단락 55(1) 또는 (3)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 (a)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초래한 것, 혹은
  - (b) 그 사람이 이 스케줄의 파트 2에 따른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
- 관련 기간은 처벌을 초래하는 미이행이 시작된 날부터 시작하여 20년의 기간이다.
- (4) 하위단락 (3)에서, 관련자가 초래하는 손실에는 해당 관련자를 대리하는 다른 사람이 초래하는 손실이 포함된다.

*단락 51 및 52에 따른 처벌: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개정 권한*

- 60 재무부는 지정된 시점의 금액 대신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다른 금액을 사용하도록 규정에 따라 단락 51 또는 52를 개정할 수 있다.

## 파트 13

### 검토 및 항소

#### 항소 가능한 결정

- 61 (1) 관련자는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주무장관 또는 세입/관세 담당관의 결정에 반하는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 (a) 관련자가 회계기간과 관련하여 단락 7(신고서)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i) 관련자가 그 기간에 대한 CBAM 부과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 (ii) 그 기간에 대하여 관련자가 납부해야 하는 CBAM 부과금
  - (b) 이 스케줄의 파트 2에 따른 관련자의 등록 또는 등록취소
  - (c) 단락 30(5) 또는 31(5)에 따른 CBAM의 목적을 위해 등록된 사람인 것처럼 관련자를 대우하는지 여부
  - (d) 단락 30(6)에 따른 그러한 대우를 연장하는지 여부
  - (e) 주무장관이 단락 38(2)에 따른 금액 또는 해당 반환금을 관련자에게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 (f) 단락 38(2)에 따른 반환금이 과도한지 여부(단락 42 참조)
  - (g) 관련자가 단락 41(3)(b), (c) 또는 (e)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주무장관에게 납부해야 하는 금액
  - (h) 관련자가 단락 51 또는 52에 따른 처벌 또는 해당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 (i) 납부해야 할 CBAM 부과금의 기준이 되는 기간
- (2) 관련자는 주무장관 또는 세입/관세 담당관의 다음과 같은 지시에 반하는 항소도 제기할 수 있다.
- (a) 단락 15에 따른 지시
  - (b) 단락 29(2) 또는 (6)에 따른 지시
  - (c) 이 스케줄의 파트 7에 따른 그룹 처리 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그 파트에 따른 그룹 처리를 종료하는 결정
- (3) 하위단락 (1)에서, "CBAM 부과금"에는 CBAM 부과금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여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포함된다.
- (4) 이 스케줄의 이 파트의 다음 조항에서, "결정"이라 함은 하위단락 (1) 또는 (2) 내의 결정이나 지시를 의미한다.

결정을 통지받는 관련자에게 검토 제의

- 62 (1) HMRC는 항소할 수도 있는 결정을 통지받은 사람("수신인")에게 결정의 검토를 제의해야 한다.
- (2) 검토 제의는 수신인에게 결정을 통지함과 동시에 통지를 통해 수신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 (3) 수신인은 HMRC에 통지하여 수신인의 선택에 따라 제의를 수락할 수 있도록 결정을 수신인에게 통지하는 문서 발행일부부터 시작하여 30일의 시간을 가진다.
- (4) 제의는 수신인이 결정에 반하는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철회된 것으로 처리한다.
- (5) 검토의 결론으로 구성되는 결정에 대해서는 이 단락을 적용하지 않는다.

#### 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권리

- 63 (1) 수신인을 제외하고, 결정에 반하는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관련자("이해관계자")는 HMRC에 통지하여 결정의 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 (2) 그러나 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는 관련자가 결정에 반하는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상실된다.
- (3) 하위단락 (1)에 따른 통지는 이해관계자가 결정을 인지하게 되는 날부터 시작하여 30일의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검토

- 64 (1) 세입/관세 담당관은 다음의 경우 결정을 검토해야 한다.
- (a) 수신인이 검토 제의 수락을 단락 62에 따라 HMRC에 통지했다. 혹은
- (b) 이해관계자가 검토 필요성을 단락 63에 따라 HMRC에 통지했다.
- (2) 그러나 담당관은 수신인이나 이해관계자가 결정에 반하는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결정에 대하여 검토할 수 없거나 검토를 중지해야 한다.

#### 검토를 유발하는 시간 연장

- 65 (1) 세입/관세 담당관은 통지를 통해 수신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결정의 검토를 유발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2) 이 기간은 다음과 같은 날짜부터 시작하여 30일의 기간 종료일까지 연장된다.
- (a) 통지일, 혹은
- (b) 통지서나 추가 통지서에 명시된 그 외의 날짜
- (3) 이 단락 및 단락 66(시간 외 검토)의 목적을 위해, 수신인이나 이해관계자가 결정의 검토를 유발할 수 있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 (a) 수신인과 관련하여, 수신인이 단락 62(3)에 언급된 결정의 검토 제의를 수락하기 위한 30일,

- (b) 이해관계자와 관련하여, 관련자가 단락 63(3)에 언급된 결정의 검토를 요구하기 위한 30일의 기간, 혹은
- (c) 이 단락에 따라 연장되었거나 최근에 연장된 단락 (a) 또는 (b)에 언급된 기간

### 시간 외 검토

- 66 (1) 이 단락은 수신인이나 이해관계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 적용한다.
- (a) 결정의 검토를 제때에 유발하지 않았다. 그리고
  - (b) 시간 외 검토를 위한 서면 요청서를 HMRC에 제출한다.
- (2) 세입/관세 담당관은 수신인이나 이해관계자가 다음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결정을 검토해야 한다.
- (a) 결정의 검토를 제때에 유발하지 않은 합리적인 변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 (b) 그 변명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경우 과도한 지연 없이 요청했다.
- (3) 그러나 담당관은 수신인이나 이해관계자가 결정에 반하는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결정에 대하여 검토할 수 없거나 검토를 중지해야 한다.
- (4) 이 단락의 목적을 위해
- (a) 수신인은 결정의 검토를 유발할 수 있는 기간에 단락 62에 따라 결정의 검토를 수락하여 제때에 결정의 검토를 유발한다.
  - (b) 이해관계자는 결정의 검토를 유발할 수 있는 기간에 단락 63에 따라 결정의 검토를 요구하여 제때에 결정의 검토를 유발한다.
- (5) 수신인이나 이해관계자가 결정의 검토를 유발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조항은 단락 65(3)(검토를 유발하기 위한 시간 연장)을 참조한다.

### 검토

- 67 (1) 이 단락은 세입/관세 담당관이 단락 64 또는 66에 따라 검토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 적용한다.
- (2) 검토의 성격과 범위는 담당관의 판단으로 상황에 적합해야 한다.
- (3) 하위단락 (2)의 목적을 위해, 담당관은 다음과 같은 사람이 검토 시작 전에 취하는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 (a) 결정을 내리기 위해 의사결권자, 그리고
  - (b) 결정에 대한 줄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사람
- (4) 검토 시에는 수신인이나 이해관계자가 제시하는 표현을 고려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회를 담당관에게 주는 단계에서 이러한 표현을 감안해야 한다.
- (5) 검토 시에는 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a) 유지됨,

- (b) 변경됨, 혹은
- (c) 취소됨
- (6) 담당관은 다음 기간 종료 전에 검토의 결론과 사유를 담은 통지서를 수신인이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 (a) 관련 날짜부터 시작하여 45일의 기간, 혹은
  - (b) 담당관과 수신인 또는 담당관과 이해관계자가 합의할 수도 있는 그 외의 기간
- (7) 하위단락 (6)에서, "관련 날짜" 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 (a) 단락 62 내에 해당하는 경우, HMRC가 검토 제의를 수락하는 수신인의 통지를 접수한 날짜,
  - (b) 단락 63 내에 해당하는 경우, HMRC가 검토를 요구하는 이해관계자의 통지를 접수한 날짜, 혹은
  - (c) 단락 66 내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관이 검토를 수행해야 하는 책무를 지고 있다고 판단한 날짜
- (8) 세입/관세 담당관이 검토를 수행해야 하지만 하위단락 (6)에 명시된 기간 내에 결론을 통지하지 못하는 경우 검토는 결정이 보류되었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처리한다.
- (9) 하위단락 (8)을 적용하는 경우 담당관은 검토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된다는 결론을 수신인이나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항소 제기

- 68 (1) 단락 61에 따른 항소는 다음 시점 전에 재판소에 제출한다.
- (a) 다음 날짜부터 시작하여 30일의 기간 종료 시점
    - (i) 수신인이 항소인인 경우, 항소와 관련한 결정을 수신인에게 통지하는 문서의 발행일, 혹은
    - (ii) 수신인 이외의 사람이 항소인인 경우, 그 사람이 결정을 인지하게 되는 날짜, 혹은
  - (b) 그보다 더 늦은 경우, 항소인이 결정의 검토를 유발할 수 있는 기간 종료 시점(단락 65(3)에 따라 해석함)
- (2) 그러나 이는 하위단락 (3)~(5)에 따른다.
- (3) 단락 64에서 결정의 검토를 요구하는 경우
- (a) 결론일까지 항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리고
  - (b) 그 날짜부터 시작하여 30일의 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 (4) 단락 66에 따라 결정의 검토를 요청한다면
- (a) 다음의 경우 항소를 제기할 수 없다.
    - (i) 검토를 수행할지 여부와 관련하여, 세입/관세 담당관이 수신인이나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 (ii) 세입/관세 담당관이 결론일 전에 검토를 수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수신인이나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한 경우
- (b) 단락 (a)(ii)가 적용되는 항소는 결론일부터 시작하여 30일의 기간 내에 제출한다.
- (c) 세입/관세 담당관이 검토를 수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수신인이나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했다면, 재판소가 허가하는 경우에만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 (5) 단락 67(8)이 적용되는 경우 단락 67(6)에 나와 있는 해당 기간 종료일부터 시작하여 결론일 이후 30일 지나서 종료되는 기간 중 언제라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 (6) 항소는 재판소가 허가하는 경우 이 단락에 지정된 기간 종료 후 제기할 수 있다.
- (7) 이 단락에서, "결론일"이라 함은 검토의 결론을 통지하는 문서 발행일을 의미한다.

### 항소에 대한 추가 조항

- 69 (1) 관계자가 부과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결정과 관련한 단락 61에 따른 항소는 HMRC가 납부해야 한다고 결정한 금액이 주무장관에게 납부되었거나 예치되지 않았다면 재판소에서 심사할 수 없다.
- (2)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하위단락 (1)을 적용하지 않는다.
- (a) HMRC가 항소인의 신청에 대하여 부과금을 납부하거나 예치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으로 인해 항소인이 곤경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거나, HMRC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소가 그러한 사실을 결정했다. 그리고
  - (b) 항소인은 HMRC 또는 상황에 따라 재판소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의 방식으로 (해당하는 경우) 그 외 해당 부과금을 납부하거나 예치했다.
- (3) 재판소·법원·집행법 2027의 섹션 11 및 13에도 불구하고, 곤경에 관한 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 항소에 대한 결정

- 70 (1) 단락 61에 따른 항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 (a) 항소인과 관련한 평가가 평가되었어야 하는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에 대한 평가인 것으로 밝혀진다. 그리고
  - (b) 재판소가 올바른 금액을 지정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 평가는 원래 평가와 동시에 해당 금액으로 항소인에게 통지된 평가인 것처럼 지시서에 명시된 금액의 평가로서 효력을 가진다. 이는 평가 금액에 대한 미지급 이자액을 감액할 수 있는 이 스케줄에 따른 권한을 저해하지 못한다.

- (4) 단락 61에 따른 항소에 관하여, 결정과 관련한 재판소의 권한에는 의사결정권자가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없었음을 근거로 하여 재판소가 허용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의 권한이 포함된다.
- (a) 강제력을 지니는 결정은 재판소가 지시할 수도 있는 시점부터 더 이상 효력을 지니지 않는다는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한, 혹은
  - (b) 재판소의 지시에 따라 원래 결정의 검토 또는 추가 검토를 적합하게 실시할 것을 세입/관세 담당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
- (5) 단락 61에 따른 항소에 관하여, 재판소는 처벌이나 이자액에 대한 채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채무와 관련하여 미지급금 수정을 위한 지시를 내릴 수 없다.
- (a) 이 스케줄의 파트 12(처벌)에 의거해 재판소에 부여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혹은
  - (b) 미지급금이 이 법의 이 파트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금액과 동일하도록 하기 위한 경우
- (6) VATA 1994의 섹션 85 및 85B(합의를 통한 항소 해결, 그리고 추가 항소가 있는 경우 세금 납부)는 VATA 1994의 섹션 83에 따른 항소에 적용하므로 이 스케줄의 단락 61에 따른 항소와 관련하여 적용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 이 스케줄의 단락 61은 그 법의 섹션 83을 지칭함, 그리고
  - (b) CBAM은 부가가치세를 지칭함

## 해석

- 71 이 스케줄의 이 파트에서,
- "수신인"은 단락 62(1)을 참조한다.
  - "이해관계자"는 단락 63(1)을 참조한다.
- 그리고 결정에 반하는 항소는 단락 61에 따른 결정에 반하는 항소를 지칭한다.

## 파트 14

### 해석

- 72 이 스케줄에서, "재판소"라 함은 1단계 재판소 또는 재판소 절차 규칙에 정해져 있는 고등 재판소를 의미한다.

스케줄 3

섹션 10

CBAM: 집행과 관련한 보충 개정

정보 및 검사 권한

- 1 (1) FA 2008의 스케줄 36(정보 및 검사 권한)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단락 61A(2)(관련 제3자에 대한 정의)의 표에서, 항목 14 뒤에 다음을 삽입한다.

---

"15 FA 2026의 섹션 2의 의미 내에 그 사람이 관여되어 탄소국경조정제도 해당하는 CBAM 제품의 생산이나 있거나 관여되었던 영국으로의 수출입, 또는 그와 연계된 사항과 관련한 문서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직능은 무관함)

---

16 FA 2026의 섹션 2의 의미 내에 그 사람이 관여되어 탄소국경조정제도" 해당하는 CBAM 제품의 공급, 저장, 있거나 관여되었던 구매, 판매 또는 운송에 참여하는 사항과 관련한 문서 사람(직능과 무관함)

---

- (3) 단락 63(1)(세금에 대한 정의)에서, 단락 (k) 뒤에 다음을 삽입한다.  
"(ka) 탄소국경조정제도"

세금 회피 제도의 공개

- 2 F(2호)A 2017의 스케줄 17(세금 회피 제도의 공개: 간접세에 대한 정의)의 단락 2(1)에서, "기후변화 부과금" 뒤에 다음을 삽입한다.

일련의 세금 회피

- 3 FA 2016의 스케줄 18((일련의 세금 회피: 간접세에 대한 정의)의 단락 4(2)에서, "기후변화부과금" 뒤에 다음을 삽입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

스케줄 4

섹션 10

CBAM 관련 범죄

파트 1

사기적 회피

- 1 (1) 관련자는 CBAM의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사기성 회피에 고의로 관여하거나 사기성 회피 목적의 조치에 고의로 관여하는 경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 (2) 하위단락 (1)에 언급된 CBAM의 회피에는 자격이 없는 상황에서 다음 사항을 얻는 것이 포함된다.
  - (a) CBAM 관련 구제책, 혹은
  - (b) CBAM 반환금
- (3) 이 단락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a) 잉글랜드 & 웨일스에서 약식 유죄 판결 시
    - (i) 치안판사 법정에서 일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의 징역형,
    - (ii) £20,000 또는 그보다 더 큰 경우에는 회피하려고 했던 CBAM 부과금 총액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형, 혹은
    - (iii) 둘 모두
  - (b) 스코틀랜드에서 약식 유죄 판결 시
    - (i)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의 징역형,
    - (ii) 법정 최고액 또는 그보다 더 큰 경우에는 회피하려고 했던 CBAM 부과금 총액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형, 혹은
    - (iii) 둘 모두
  - (c) 북아일랜드에서 약식 유죄 판결 시
    - (i)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의 징역형,
    - (ii) 법정 최고액 또는 그보다 더 큰 경우에는 회피하려고 했던 CBAM 부과금 총액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형, 혹은
    - (iii) 둘 모두
  - (d) 고발장에 대한 유죄 판결 시
    - (i) 14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의 징역형,
    - (ii) 벌금, 혹은
    - (iii) 둘 모두

- (4) 하위단락 (3)에서, 회피하려고 했던 CBAM 부과금에는 자격이 없는 상황에서 구하려고 했던 다음과 같은 금액이 포함된다.
  - (a) CBAM과 관련한 구제책의 금액, 그리고
  - (b) CBAM 반환금
- (5) 하위단락 (3)의 목적을 위해 회피하려고 했던 CBAM 부과금을 결정할 때는 관련자가 자격을 갖추었던 CBAM 관련 구제책의 금액 또는 CBAM 반환금만큼 관련자의 세금 채무를 감액하거나 감액했을 범위를 감안하지 않는다.

## 파트 2

### 허위 진술

- 2 (1) 관련자는 CBAM과 관련한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하는 경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 (a) 중대한 사항과 관련해 거짓 문서를 작성/제공하거나(혹은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거나) 활용한다.
  - (b) 어떤 사람을 기만하거나, 기계가 진실된 문서인 것처럼 문서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의도하면서 그러한 행동을 한다.
- (2) 관련자는 이 법의 이 파트의 조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때 다음과 같이 하는 경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 (a) 관계자가 중대한 사항과 관련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내용을 진술한다. 혹은
  - (b) 중대한 사항과 관련해 거짓 내용을 분별없이 진술한다.
- (3) 이 단락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a) 잉글랜드 & 웨일스에서 약식 유죄 판결 시
    - (i)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의 징역형,
    - (ii) £2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형, 혹은
    - (iii) 둘 모두
  - (b) 스코틀랜드에서 약식 유죄 판결 시
    - (i)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의 징역형,
    - (ii) 법정 최고액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형, 혹은
    - (iii) 둘 모두
  - (c) 북아일랜드에서 약식 유죄 판결 시
    - (i)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의 징역형,
    - (ii) 법정 최고액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형, 혹은
    - (iii) 둘 모두

- (d) 고발장에 대한 유죄 판결 시
  - (i) 14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의 징역형,
  - (ii) 벌금형, 혹은
  - (iii) 둘 모두
- (4) 다음의 경우 이 단락에 따른 범죄와 관련하여
  - (a) 하위단락 (1)에 언급된 문서는 스케줄 2의 파트 3에서 요구하는 신고서이다. 혹은
  - (b) 하위단락 (2)에 언급된 정보는 그러한 신고서에 들어 있거나 그러한 신고서와 관련이 있다.

약식 유죄 판결 시 최대 벌금은 상황에 따라 £20,000 또는 법정 최고액, 그리고 신고서에 관련자의 CBAM 채무를 과소 기재하는 금액(만약 있는 경우)의 합계액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높은 금액이다.
- (5) 하위단락 (4)에서, 신고서에 관련자의 CBAM 채무를 과소 기재하는 금액은 다음 금액의 합계액을 지칭한다.
  - (a) 관련자의 총 채무가 과소 기재되는 금액(해당하는 경우)
  - (b) 관련자의 CBAM 관련 구제책 및 CBAM 반환금 자격이 과대 기재되는 금액
- (6) 단락 (5)에서, "총 채무"라 함은 CBAM 관련 구제책 및 CBAM 반환금 자격과 관련하여 공제 전 CBAM 채무를 의미한다.